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 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조례안

의안 번호	1046
----------	------

제출일자 : 2013.11.21.

제 출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1. 제정이유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특수한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서해 5도에 근무하는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제정근거

- 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2조
- 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 다. 서해5도 근무 지방공무원 특수근무지수당 지급액 승인 통보
[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과-2783(2013.10.07.)호]

3. 주요내용

- 가. 이 조례 제정의 목적을 정함.(안 제1조)
- 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대상의 범위 및 지급액을 정함.(안 제2조)

4. 조례안 : 붙임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1
- 나. 입법예고(2013. 10. 29. ~ 11. 17.) 결과 : 의견없음
- 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 붙임 2
-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붙임 3
- 마. 교육규제 : 신설·강화 규제 해당 없음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서해 5도에 근무하는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수지근무수당)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서해 5도에 근무하는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 지급액을 월 20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련법령 및 참고자료

<p>관계법령 및 참고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2조(정의)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특수지근무수당) ■ 서해5도 근무 지방공무원 특수근무지수당 지급액 승인 통보 [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과-2783(2013.10.07.)호] <p style="text-align: center;">“세부내용 별지 작성”</p>
----------------------------	--

관계법령 및 참고자료 발췌

■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서해 5도"란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속하는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와 인근 해역을 말한다.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특수지근무수당) ①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등급구분에 따라 특지는 월 6만원, 감지는 월 5만원, 을지는 월 4만원, 병지는 월 3만원의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하되,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서해 5도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 서해5도 근무 지방공무원 특수근무지수당 지급액 승인 통보

[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과-2783(2013.10.07.)호]

정부3.0, 국민과의 약속



안전행정부

수신자 인천광역시교육감(복지재정과장)

(경유)

제목 서해5도 근무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액 승인 통보

1. 인천광역시교육청 복지재정과-19399(2013. 9. 23) 관련입니다.
2. 귀 교육청에서 승인 요청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금액을 아래와 같이 승인 하오니 관련 조례를 개정한 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금액 : 특수지근무수당 특지 지급액을 200천원으로 인상
- 시행시기 : 관련 조례 개정 이후
- 승인내역

지 급 대 상	지 급 액		
	현 행	요 청	승 인
○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서해 5도에 근무하는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지역과 그 등급 별 구분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조례에 준함)	60천원	200천원	200천원

끝.

안전행정부장관

주무관

행정사무관

지방공무원과장

협조자

시행 지방공무원과-2783 (2013.10.07.) 접수 복지재정과-20493 (2013.10.7.)
 우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04호 /http://www.mospa.go.kr
 전화 02-2100-3795 /전송 02-2100-4228 / yeonggi@mospa.go.kr / 공개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붙임 2]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특수지급무수당 지급 조례(안)		
평가담당	(소속)감사관실	(직급) 7급	(성명) 정 광 현
입안주무부서	복지재정과	통보(조치)일	2013.10.29.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안 동의 	

[붙임 3]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3-18
정책명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조례(안)」 제정
소관부서	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부서명 복지재정과
	담당자명/ 전화번호 임상진 주무관 / 420-8337
분석평가서 제출 날짜	2013년 10월 23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서해 5도에 근무하는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을 월 20만원으로 지급함
종합 검토 의견	○ 원안동의 -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법령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제외 대상
<p>「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3년 10월 24일</p> <p style="text-align: center;">인천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책임관 모택상 (담당자/연락번호 : 최 은 미/032-420-8268)</p>	